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40호

「대전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5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대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나.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행정 자치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4, FAX 042-270-5029, E-mail : pil6969@korea.kr)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문 화적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 다.
 - 2.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 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 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대전광역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2. 장애문화예술인 공연·전시·창작 등의 활동 지원

- 3. 역량 있는 우수 장애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
-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5조(위탁) 대전광역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

- (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 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 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 어야 한다.
 - ② 삭제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 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